Korean Practice Tax News Alert

February 18, 2013

해외 금융자산 보고 (FATCA) 최종시행령 발표

해외 금융자산 보고 규정 (FATCA,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의 최종 시행령 (Final Regulations) 이 지난 1 월 17 일에 발표되었습니다. 2010 년 3 월 오바마 정부가 전격 발표한 건강보험 개혁 (Health Care Reform) 과 경기부양을 위한 고용장려법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등에 대한 재원 확보와 해외 소득에 대한 세수 강화를 위해 최초 도입된 이 법은, 그로부터 약 3 년이 경과한 현재 수많은 공청회, 전문가로부터의 의견 청취, 미 정부내의 토론과 협의, 외국 정부와의 협약 등 여러 과정을 거쳐 세부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동안 큰 틀에서의 법규만 정해 놓고 자세한 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이 법의 시행시기에 대한 논란이 있어 왔지만, 이제 발표된 대로 2013 년부터 미국 납세자들에게 해외 금융자산의 정보 보고는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되었고, 미국에 거주하는 한인 납세자와 기업들 특히, 한국 등 해외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납세자에게는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뉴스레터에서는 FATCA 의 기본 내용을 간략히 소개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업무에 도움이 되어 드리고자 합니다.

FATCA 란 무엇인가?

FATCA 는 2013 년부터 해외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미국 납세자가 보유한 해외 금융계좌에 대한 정보를 미 국세청 (IRS) 에 제공하도록 하는 법입니다. 금융계좌는 은행, 증권사, 신용카드사, 보험사, 각종 펀드 등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얻는 금융회사에서 개설된 계좌를 의미합니다. 미 국세청은 이를 통해 해외유출 세금을 줄여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하고자 하는 것인데, 만약 외국 금융회사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 미 국세청은 해당 금융회사와에 지급되는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서 30%의 원천징수를 부과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미 국세청이 직접 해외 금융기관들과 협정을 맺는 대신 필요한 정보를 자국 정부에 제공하고, 그 정부가 국가간의 협약을 통해 미 국세청과 정보교환을 하는 형식으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FATCA 와 FBAR 는 어떻게 다른가?

FBAR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는 오래전부터 시행된 사항으로 최근 역외 세수강화를 강조하며 그 중요성이 높아진 것으로, 년간 1 만불이상의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다음 해 6 월 30 일까지 미국 재무성으로 TD.F. 90-22.1 의 양식을 통해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 FATCA 는 보다 광범위한 규정으로, 2012 년부터 일정금액 (Single 신고시 년말 시점에 5 만불이상 또는 년중 7 만 5 천불이상이며, 부부합산 신고시는 각각 년말 10 만불 또는 년중 15 만불로 증가함) 을 초과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양식 8938 을 통해 세무신고서와 함께 보고를 하는 것이며, 2013 년부터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미 국세청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직접 정보를 확보하여 해외 탈세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미 국세청은 FBAR 와 FATCA 를 통해 사전적으로 외국 금융기관에 대한 정보를 얻고 향후 납세자들이 자진 신고하는 내용과 비교하여 과세할 수도 있으므로, 신고의 대상이 되는 납세자는 성실하고 일관되게 내용을 보고해야 할 것입니다.

FATCA 의 대상이 되는 금융자산은 무엇인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FATCA 에서 규정한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계좌에 등록된 자산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부동산은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FATCA 와 FBAR 의 보고대상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그러나, 부동산에 발생하는 수익이 있으며 이를 금융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금융기관의 상품을 통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경우 등은 금융자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인정되어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

FATCA 시행시 한국기업에 미칠 영향은?

FACTA 는 모든 미국 납세자에게 적용되는 법으로서,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의 미국 거주자 등을 포함하는 개인 납세자 뿐 아니라 기업, 파트너쉽, 트러스트, 미국인 소유 해외법인 등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이에 따라 미국 납세자는 한국을 포함한 외국의 금융기관의 금융자산에 대해 미 국세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성실하고 일관되게 신고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벌금이 부과되거나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도 있으며, 세무신고시 이를 누락하는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 지대한 세무상 불이익에 노출될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최종 시행령의 자세한 내용은 별첨의 FATCA News Update (KPMG 한국 FATCA Team) 와 Analysis of Final FATCA Regulations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향후 FACTA 의 최종 시행령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예규 (Revenue Ruling) 나 시행규칙(Revenue Procedure) 등을 통해서 보완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자: Hoe Don Jung, Tax Senior Manager, hdjung@kpmg.com).

한편, KPMG 에서는 2013 년 2 월 22 일 (금요일) 오전 11 시부터 1 시간 동안 FATCA 의 최종 시행령에 관한 Webcast 가 예정되어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오른쪽의 상단의 링크를 통해 참여 하실 수 있겠습니다.

본 뉴스레터 관련하여 질문이 있으시거나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KPMG 한국부의 각 지역 (뉴욕, 로스엔젤레스, 애틀랜타) 담당자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New York
박종연: 212-872-6696, cpark@kpmg.com
박상환: 212-872-6993, shpak@kpmg.com
이웅근: 212-872-7954, guslee@kpmg.com
이경렬: 212-872-5658, kklee@kpmg.com

Los Angeles
김준경: 213-955-8514, jkkim@kpmg.com
김창욱: 213-593-6683, cpkim@kpmg.com

Atlanta
강훈규: 404-222-3580, hoonkang@kpmg.com
홍정기: 404-658-5100, chong@kpmg.com

Privacy | Legal

You have received this message from KPMG LLP. If you wish to unsubscribe from Korean Practice Tax News Alert, please click here. If you wish to unsubscribe from all KPMG communications, please click here.

KPMG LLP, 345 Park Avenue, New York, NY 10154

© 2013 KPMG LLP, a Delaware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and the U.S.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 (“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142399

The KPMG name, logo and “cutting through complexity” are registered trademarks or trademarks of KPMG International.